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신규 지정 공모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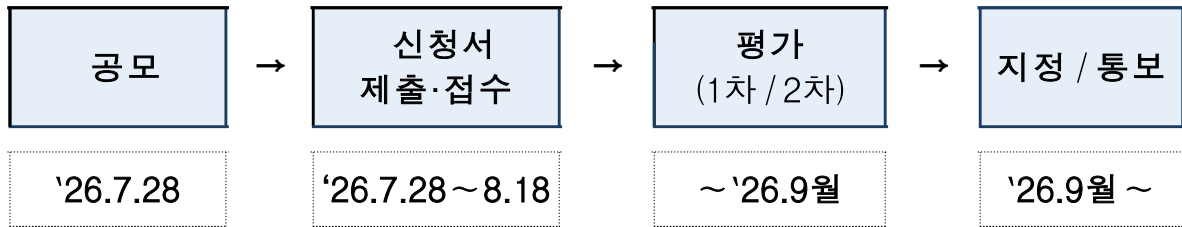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 공급망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중요 재난관리물품을 신속·안정적으로 공급
- 우리부 주관 재난관리 필수품목의 공급망위험성, 범용성, 지정 기대 실익 중 높은 품목인 제설제 재난관리지원기업 우선 지정 필요

2. 법적 근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1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1호, 2024.12.26.)

3. 공모 일정



구분	단계별		기간	조치사항
1	공모·접수		7.28~8.18 (3주)	(사업자) 지정 신청서 작성·제출 (행안부) 신청서 접수
2	평가	1차	8월	(행안부) 공모평가단 구성, 서류 평가 진행
		2차	9월	(행안부) 서류평가 통과 사업자에 대하여 현장 평가 실시
3	지정위원회		9월	(행안부) 지정위원회 개최·심의
4	지정통보		9월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통보

※ 신청서 접수 마감 : '26.8.18.(화) 18:00까지 접수된 건으로 한정 / 평가 진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공모 참가 자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 >

-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염화칼슘, 비식용소금) 공급업자
- 국내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 「재난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

<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설정하는 공모 참가자격 >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비식용소금 수입업 등록업체일 것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수입업 등록업체일 것
- 「물류시설법」에 따른 창고업으로 등록하였거나 해당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창고 면적을 보유 및 임대한 업체일 것
- 최근 5년, 매년 제설제를 직접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최근 5년, 매년 제설제를 지방정부, 국토관리청(지역사무소 포함),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관리기관에 공급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최근 5년, 매년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시·도에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공급역량을 갖춘 업체일 것

5. 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준비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의무(법제10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동원명령시 이에 따른 의무(법제51조)
- 그 외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임무 수행
 - 지방정부의 제설제 보관장소 및 항만 인근 창고 확보 등
 - 재난관리물품의 운송·보관 및 하역, 부가되는 작업

6.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 : 붙임2 참조

7. 기타 사항

○ 평가절차

- (1차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임무수행계획서,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임무 수행 역량 및 전문성, 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
- (2차 평가) 사업장 및 임무 관련시설 방문, 1차 평가 결과의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임무 수행 역량 등 평가

○ 지정절차 : 1~2차 평가 모두 통과된 경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결정

○ 제출서류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서(붙임1)
- 임무수행계획서(붙임2 참고) 및 증빙서류(붙임1 제출서류 목록 참고)
- 평가 관련 증빙서류(붙임3 참고)
- 공모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문의 및 접수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5)
- (접수)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
 - 공문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 메일 : ksj27@korea.kr

붙임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기업 현황	임무수행계획 개요	
	재난관리품목	매출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무수행계획서 및 증빙서류(아래 첨부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감사보고서(최근 3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2.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평가·심의	→	지정	→	지정서 발급·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붙임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표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제6조 관련)

※ 임무수행계획서의 목적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서의 역할 인식과 재난관리물품(용역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 상황별 재난관리물품 공급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1. 목적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는 목적과 동기 등을 제시한다.

2. 시설·장비·인력 현황

재난관리물품의 공급 관련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보유 현황

3.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준비 조치 명령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가. 재난관리물품 공급 활동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장비 목록, 수량 및 규격 등 제시
나. 재난관리물품의 기능,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

다. 자체 재난관리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시스템(KRMS) 연계 방안 제시

라. 준비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재난관리 임무 수행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

마. 임무 수행 협의 및 조정 등 재난관리기관과의 의사소통계획

4. 임무 수행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

평상 시와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임무 수행 내용을 작성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지정 재난관리물품 공급계획과 재난 중 물류에 문제가 발생할 시 재난관리 물품 공급 대응계획을 작성한다.

가. 평상 시 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기관 등이 비축시설, 전진기지 등에 입고 요청하거나 일정 물량을 간접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 재난관리물품 운송 수요 인지 또는 기 물품 보유시설 간 관리전환 소요 인지 및 후속 임무 수행 전환방안 강구

나. 법 제55조 재난관리자원 동원 훈련 시 참여계획

다. 재난 시 재난관리물품을 재난현장까지 공급 요청하거나 물류 문제가 발생하여 간접 보관한 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기관이 수요 거점으로 공급 요청 시 상황 인지 및 후속 임무 수행 전환방안 강구

5. 임무 유형별 세부수행계획

재난 시 공급 임무 수행 자체에 집중하여 재난관리물품 공급과 보관에 대한 계획과 함께 KRMS와의 상호연계 체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가. 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필요 재난관리물품 생산/공급기업의 물품을 운송하는 방안

나. 재난관리물품의 운용, 설치, 시공 등이 필요한 용역과 공사가 포함된 재난관리지원기업은 해당 역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까지 동시에 공급하는 방안

다. 재난관리기관 요청에 따라 간접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을 수요 거점까지 공급하고 이후 재고 유지방안

라. 재난관리지원기업이 기 보유한 물류망 활용이 제약되는 경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망 활용 방안

6.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준비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과 임무수행계획에 따른 실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주요 점검 기준을 수립한다.(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7. 핵심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

임무수행계획서에 기재한 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재난관리 공급망 임무 수행에 대하여 달성 가능한 성과 항목과 수준을 제시한다.

가. 적기 공급 완료 수준(이행률 등)

나. 재난관리물품 공급 수량·재고 준수 기준

다. 공급 요청에 대한 대응 소요시간

라. 공급 요구물량 일시적 급증 시 대응 가능 수준 범위

8. 업무 실효성 제고방안

재난관리물품 공급기업으로서 본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붙임3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별표 3]

1. 1차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내용	평가 방법	관련 서류
	계	100			
공급 역량 (40)	공급 안정성	10	지정 대상 물품의 요구물량 공급 가능성	- 최근 3년 지정 대상 물품의 요구물량 대비 공급실적 보유 수준 * 재난관리지원기업의 기본적 역할은 특정 재난 관리물품에 대하여 비축, 구매, 임대 및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공급(필요한 경우 물품을 활용한 역무 제공 포함)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정 수준의 공급실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공급 가능 여부 평가	실적증명서
	운송 안정성	10	지정 대상 물품의 적기 운송 가능성	지정기업 자체 물류 수단(운송 수단 보유 유무)과 제3자 물류(법인 장기계약) 동시 활용 여부	- 자체 물류 운송 수단 보유 사실차량등록증 - 제3자 물류 업체와의 운송계약서
	1회 최대 공급 가능 규모	5	납품 요구 시 1회 최대 공급 물량	- 지정 대상 물품 월평균 생산량 및 재고 보유량 - 최대 소요 물량의 100%를 한도로 5등급 평가 *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긴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관리(수요)기관별 1일 예상 수요물량 고려	직전연도 재무제표 (공인 회계법인)
	생산/유통 전문성	5	지정 대상 물품의 공급 기간 (생산/공급 이력)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공급 물품 또는 공장 등록증 상 생산/유통 시작일 이후 경과 기간 -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해 제조 및 공급(유통) 업체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업력에 따라 최대 15년을 한도로 5등급 평가, 공급 업체는 업력의 50%만을 인정하여 차등 평가	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기술/품질 우수성	10	지정 대상 물품 및 기타 생산 물품의 기술/품질/성능 수준	- 지정 대상 물품을 포함한 생산/공급 물품의 특허, NEP, NET GS, 녹색 기술 등 인증서 보유 건수 *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기술적 우월성을 제3자 인증하는 NEP, NET,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재난안전제품인증과 KS, ISO 등 국내외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인 경우로서 최초 취득 후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	특허등록증 및 기술/품질 인증서 (특허청, 인증기관)
재난 대응 전문성 (40)	재난 지원 업무 계획 적정성	20	재난관리 지원기업 임무수행 계획	신청기업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전담 인력, 시설, 장비 운용계획 등) 적정성	재난관리임무수행 계획서(신청기업)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가내용	평가 방법	관련 서류
	재난 대응 전문성	15	재난 대응 관련 지정 대상 물품 공급실적 보유 수	- 최근 3년간 재난 대응 관련하여 지정 대상 물품 공급 경험 3건이상 만점 * 일반적 공급환경이 아닌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관리업무지원기업으로 구체적 수행이 필요한 임무 수행 경험 평가	실적증명서 및 관리 기관 공문(재난 관련 공급사실 확인)
	재난 관련 기술 수준	5	지정 대상 물품 포함 재난안전 제품인증 보유 수준	- 지정 대상 물품 보유 만점 / 타 공급 물품 보유 3건 이상 만점 * 지정 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재난 관련 특화된 제품의 기능/성능/품질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에 지원하는 업체들의 재난 안전 관련 기술력 향상을 유도	재난안전제품인증서 (행정안전부)
운영 안정성 (20)	사회적 책임	5	공정거래, 노사 관계 및 공공계약이행 안전성 수준	-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과 공공 계약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행정제재 부과 건수 * 재난관리업무와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공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부여되므로 기업으로서 노동(노사 관계 안정성), 계약(공공 계약 이행 안정성)을 중심으로 법인과 대표자에게 부과된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정제재 이상 처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평가	- 행정제재 부과 사실 확인서(신청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고용 노동부(노사안정성), 기획재정부(계약), 행정안전부(계약)
	사업장 재난/재해 발생 수준	5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재해 발생 수준	- 최근 5년간 사업장 중대재해, 일반 산업안전 재해 발생 건수 - 무재해 만점 * 재난관리업무지원기업은 재난 대응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스스로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정기업의 내외적 타당성 제고	최근 5년간 ‘산업 재해율’확인서(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 상태	5	업무지원 역할 이행의 재무적 안정성	- 신용평가등급 수준에 따른 정량 평가 * 재난관리업무지원기업은 5년 이상 지정 유효기간이 부여됨으로 해당 기간 안정적으로 비축, 보관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	신용평가기관(한국 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공급 가격	5	신청기업의 지정대상 물품 공급가격	- 비교기준가격 대비 해당 업체의 공급 가격 수준 *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비축, 보관 및 재난 발생시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바 이에 상응한 공급가격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재난대응에 필요한 필수 물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과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	거래실례가격자료 견적가격 자료(3개 업체 이상)

※ 평가점수 배점 방식

- (20점): 매우 높음 17~20점, 높음 13~16점, 보통 9~12점, 낮음 5~8점, 매우 낮음 0~4점
- (10점): 매우 높음 9~10점, 높음 7 ~ 8점, 보통 5~ 6점, 낮음 3~4점, 매우 낮음 0~2점
- (5점): 매우 높음 5점, 높음 4점, 보통 3점, 낮음 2점, 매우 낮음 0~1점

2. 2차 평가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계	100		
공급 역량	생산시설 점검	20	재난관리물품의 직접 생산/공급 시설 실태	신청기업의 제조공장 또는 보관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 대상 재난관리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 역량 정성 평가
	운송설비 점검	20	신속/안정적인 배송을 위한 장비/계약 실태	
	물품 품질점검	20	생산 물품의 품질관리 실태	
	보관시설 점검	20	간접 비축/보관 창고 등 시설 운영 실태	
	인력/조직 점검	10	재난관리지원 업무 전담인력/조직보유 실태	
	종합적 환경	10	물리적/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합성	

※ 평가점수 배점 방식

- (20점): 매우 높음 17~20점, 높음 13~16점, 보통 9~12점, 낮음 5~8점, 매우 낮음 0~4점
- (10점): 매우 높음 9~10점, 높음 7 ~ 8점, 보통 5~ 6점, 낮음 3~4점, 매우 낮음 0~2점

3.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

나. 2차 평가: 1차 평가를 한 평가위원 중 3인 이상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생산 시설, 보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공급 역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 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일 경우 최종 통과된 것으로 한다.